

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(공시송달)

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(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)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19일
금융위원회

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	주민번호	주소
박현정	660319-*****	서울 용산구 한남대로
김경숙	590828-*****	경기 의왕시 오린계2길
백지연	691215-*****	서울 강북구 인수봉로
정진희	600401-*****	서울 도봉구 노해로
임명현	551025-*****	대전 서구 괴정로
김종호	600115-*****	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
송유삼	591103-*****	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
조만	680226-*****	인천시 동구 송현로

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

3. 서류의 내용 :

(1)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.

(2)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처분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박현정	<p>(1)2011.9.16.~2011.9.23. 기간 중 계약자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2건의 보험계약(월납보험료 3백만원)을 모집한 사실</p> <p>(2)2010.1.22.~2011.2.1. 기간 중 김○○ 등 3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이 곤란하자 본인의 지인(최○○) 명의로 10건의 보험계약(월납보험료 11백만원)을 모집한 사실</p> <p>(3) 2011.4.8.~2011.11.15.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5건의 보험계약(월납보험료 5백만원)을 모집한 사실</p>	보험업법 제86조, 제97조	업무정지 6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
보험설계사 김경숙	2012.2.17.~2012.9.14.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이○○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고,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7조	업무정지 9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
보험설계사 백지연	2012.4.27.~2012.9.14.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강○○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,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7조	업무정지 6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
보험설계사 정진희	2012.1.31.~2012.9.21.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오○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, 총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7조	업무정지 60일 (생명보험 모집업무에 한함)

처분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임명현	2013.5.24.~2013.11.29. 기간 중 (주)글로벌금융 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27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6 백만원)을 유퍼스트보험마케팅(주) 소속 보험 설계사 조○○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8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7조	업무정지 6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
보험설계사 송유삼	2013.3.27. ~ 2014.5.31.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 약(월납보험료 2백만원)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,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 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7조	업무정지 3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
보험설계사 김중호	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 은 직원에 해당 - 소속 보험대리점(주)엘자산관리본부)은 특 별이익 제공 등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정 지 처분을 받았고(2015.9.3. 협회 통보), - 동 사의 직원 김중호는 해당사실과 관련하 여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음(2014.10.24. 제재심의위원회 의결)	보험업법 제84조, 제86조, 제98조	등록취소
보험설계사 조만	2012.1.4.~2013.10.8. 기간 중 164건의 손해보 험계약(초회보험료 111백만원)을 모집함에 있어,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○○ 등 11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 급한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9조	업무정지 60일 (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)

4.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56-983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 끝.